5.1 공통사항

- (1)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장내 고압 송전선로, 전기·통신케이블 등 장애물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이설 하거나 방호시설을 갖추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전에 확인하여 작업배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4) 안전모, 안전대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전에 보호구의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작업중에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사용예정 장비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적인 장비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.
- (6) 위험기계·기구의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제품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(7)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주지 시키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공사차량의 출입로를 확보하고 차량유도계획을 수립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9) 작업시작 전에 가설통로, 안전방망,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0) 이동식 비계에 사용되는 부재의 재질 및 용접상태, 볼트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(11) 작업장내 공구 및 자재를 정리 정돈하여 낙하·비래 등의 재해를 예방하여 한다.